

대 법 원

제 3 부

판 결

사 건 2009도92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 
피 고 인 피고인  
상 고 인 검사  
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09. 1. 14. 선고 2008노3570 판결  
판 결 선 고 2009. 5. 14.

주 문

상고를 기각한다.

이 유

상고이유를 본다.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(2009. 2. 6.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. 이하 '법'이라고만 한다) 제141조 제6호는 "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"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, 법 제118조는 "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"라는 표제 하에 제1항에서 "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·지



